

손소독제(UN 1170) 위험물 검사 사전 안내 사항

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

- ▶ 최근 전세계적 감염병(COVID-19) 확산에 따라 손소독제 화주의 수출 문의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▶ 인화점 60℃ 이하인 손소독제는 위험화물로 취급되며, 선박을 이용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『선박안전법 제41조』에 따라 위험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▶ 아래의 검사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, 추가 문의 사항은 검사관리팀 전화(031-389-2105) 및 이메일(komdis@daum.net)로 연락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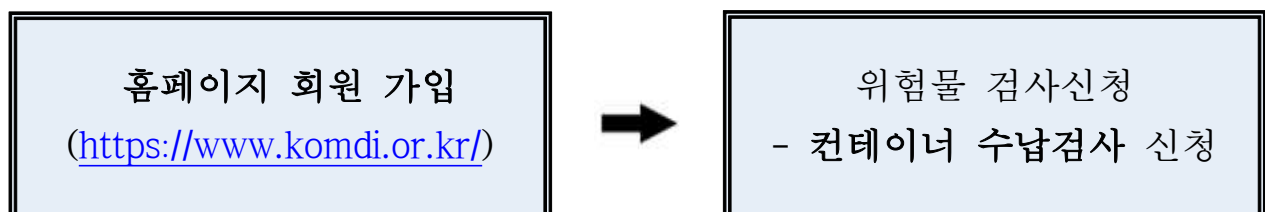
□ 위험물 분류

- 손소독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(IMDG Code)에 따라 제3급 인화성액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.

※ Class 3, UN 1170, ETHANOL SOLUTION(에탄올용액)

- 위험물로 분류된 손소독제를 선박을 이용하여 해외로 운송하는 경우, 해당 물질의 인화점이 표기된 MS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위험물 검사 신청 방법



- 검사신청 첨부 서류는 Packing list, Invoice, MSDS, 용기검사증(필요시)입니다.

□ 위험물의 포장 준비

- 골판지박스 30kg 이하, 내용기의 용량이 1L(포장등급 II) 또는 5L(포장등급 III) 이하인 경우, 소량위험물(Limited quantity) 규정에 적용됩니다. (IMDG Code 3.4장)
 - 소량위험물 규정에 적용되는 손소독제를 포장한 골판지박스에는 소량위험물 표시와 아울러 내용기의 액체 유출 방지를 위한 상방향 표시 등 규정된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.

소량위험물 표시	상방향 표시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하부 색상 : 검은색 - 중앙부 색상 : 흰색 또는 적절히 대비되는 색상 - 외곽 테두리 : 검은색, 두께 2mm 이상 - 표시의 크기(각변) : 100mm × 100mm - 골판지박스 옆면에 1개 부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별 : 2개의 검은색 또는 붉은색 화살표 - 바탕 : 흰색 또는 화살표 색과 대비되는 색상 - 사각형 테두리 : 적절한 크기의 직사각형 - 마주보는 옆면에 1개씩(총 2개) 부착
 <p data-bbox="303 1995 667 2029">〈포장화물의 표시 부착〉</p>	 <p data-bbox="957 1995 1348 2029">〈포장화물의 내용기 수납〉</p>

- 골판지박스를 파렛트 단위화물로 포장하는 경우,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스트랩핑(Strapping)과 랩핑(Wrapping)작업을 하여야 합니다.



□ 컨테이너 작업 준비

- 컨테이너에는 소량위험물을 나타내는 대형표찰이 부착되어야 합니다.
- 컨테이너에 수납된 화물은 적합하게 고박(래싱, 에어백 등) 되어야 합니다.



화물 고박의 적용 예시(래싱, 에어백 등 사용)

